

「2025년 순창군 청년창업 지원사업」 참여자 모집

청년 예비창업자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창업기반을 지원하여 청년인구의 안정적 지역 정착 및 유입을 도모하고자 「2025년 순창군 청년창업 지원사업」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5. 2. 14.

순창군수

1 사업개요

- 사업명 : 2025년 순창군 청년창업 지원사업
- 사업위치 : 관내 전지역
- 사업규모 : 5개소 이내
- 사업내용 :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

2 지원내용

- 지원규모
 - 1개소(사업장)에 총사업비 중 50%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보조
(단, 부가가치세 제외)
 - 지원내용 : 사업수행과 창업목적 달성에 직접 연관이 있는 직접사업비
 - 시설비 : 사업장 인테리어
 - 기계 및 장비구축 : 제품생산 및 보관을 위한 장비 구입 등
 - 기타 창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
- ※ 선정 이후 사업계획 이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자부담

< 지원불가 항목 >

- ▶ 상근직원의 인건비성 경비 및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, 포장비
- ▶ 창업과 직접 관련 없는 시설·장비 및 시스템 구축비
- ▶ 청소기, 컴퓨터, 공기청정기 등 일반가전 및 소모물품 등
- ▶ 공과금, 사무실 임차료, 회계처리 비용 등 각종 수수료
- ▶ 일반 사무용품 등 창업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
- ▶ 건설기계(지게차, 덤프트럭 등), 차량 등
- ▶ 단일품목 50만원 이하 기자재
- ▶ 무형자산(특허권, 저작권, 프로그램 등)

□ 지원방법 : 대상자 선정 후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완료 후 정산을 통해
보조금 지급 ※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(보탬e) 활용

□ 제외업종 : (붙임 1) 참조

3 자격요건

□ 지원대상자 자격요건 (모두 충족시 해당)

- ① 18세~49세(1975년~2006년생) 예비창업자
- ② 최근 6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(신청일 기준)
- ③ 아래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

< 지원 제외대상 >

- ▶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
- ▶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자
※ 단, 통신판매업 영위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참여 가능
- ▶ 국세, 지방세, 세외수입 체납자
- ▶ 최근 5년 이내 정부(국가), 순창군에서 유사창업자금(사업장 환경개선사업 포함)을 지원받은 자
(가족 중 부부와 미혼 자녀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5년 이내 중복지원 불가)
- ▶ 최근 3년 이내 동종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사실이 있는 자
- ▶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자
(신청자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등)
- ▶ 사업완료 전 사업자등록 후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

※ 청년이 가업(10년이상 경영한 사업장)을 승계한 경우 창업으로 인정

4

신청접수 및 선정방법

□ 공고기간 : 2025. 2. 14.(금)한

□ 접수기간 : 2025. 2. 17.(월) ~ 2. 25.(화) 17:00까지

□ 접수방법 : 방문접수

○ 접수처 : 순창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(☎ 063-650-1587)

- 순창군 순창읍 교성리 교성2길 25, 청년문화센터 1층

□ 추진절차 ※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(보탬e) 병행 추진

구 분	세 부 내 용	추진주체
공고 및 접수 (10일 내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	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
	↓	
적격 검토 (10일 내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자격(서류) 검토 및 사업장 현지 확인 	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
	↓	
심사(평가) 및 선정 (30일 내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면심사(평가) or 심의위원회 심의 	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원대상자 결정 및 교육 사업비 교부결정 (지방보조금 심의 등) 	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
	↓	
사업 추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수행 	청년창업가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관리 등 모니터링 	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
	↓	
점검·정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완료 후 정산서 제출 	청년창업가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현장점검 후 정산검사 보조금 지급 	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
	↓	
사후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원사업장 실태조사 등 	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

□ 제출서류 ※ 서류 미비시 보완 후 접수처리(미보완시 신청 취소)

작성서류	붙임서류
지원신청서 (서식 1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민등록초본(주소 변경이력 포함하여 출생부터 현재까지) • 납세증명서(국세 및 지방세) 각1부 • 총사업자등록내역 사실증명 1부
사업계획서 (서식 2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장 건축물대장 • 사업장 건물 등기부등본
창업계획서 (서식 2-1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임대차계약서(임차기간 3년이상) ※ 임차인 경우 • 시설공사 산출내역
개인정보 제공동의서 (서식 2-2)	(총괄 견적서, 원가계산서, 공종별 집계표, 설계내역서, 도면 등 상세 세부내역 첨부)
참가 서약서 (서식 2-3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계 및 장비 구입 견적서(실견적, 비교견적) • 사업장 현황사진(전면, 사업부분 등)

□ 적격 검토 및 사업장 현지 조사

- 자격요건 검토 : 주민등록상 거주, 나이, 업종 등 확인
- 사업비 내역 검토 : 시설공사 산출내역 및 기계장비 구입 견적서 등 확인
- 사업장 현지 조사

※ 필요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별도 서류평가를 통해 대상자 우선순위 결정

□ 사업선정 : 대면심사(평가) ※ 날짜는 별도 안내

- 심사항목 : 창업자 의지(20점), 창의성(10점), 가능성(20점), 전문성(20점), 경제적가치 창출 효과(10점), 자금조달(10점), 사업 확장성(10점)

※ 심사위원 한명이라도 합산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미선정

□ 결과발표 : 3월 예정 ※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- 선정여부 등 결과는 개별통보나 순창군 누리집(홈페이지) 공고

□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

- 선정자(보조사업자)가 할 일
 - ① '보탬e' 시스템에 회원가입(등록)
 - ③ '보탬e'에서 '사업수행계획서'를 출력하여 제휴은행(농협, 전북은행)에서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
 - ④ '보탬e'에 수행사업계획서 제출
 - ⑥ 보조금 교부신청
- 군에서 할 일
 - ② '보탬e' 시스템상 보조사업 대상자 확정
 - ⑤ 수행사업계획서 검토 및 접수
 - ⑦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

□ 집행등록 및 정산 절차

- 창업 완료 후 정산서 제출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
- 선정자(보조사업자)가 '보탬e' 시스템에 집행 내역 입력
 - 이미 완료한 창업 지출 내역에 맞춰 '보탬e'에 집행등록
- 집행등록 입력 시 '보탬e'에 지출서류 첨부
 - 첨부서류 : 세부사업별 전자세금계산서, 거래명세서, 무통장입금표 및 카드 영수증, 공사 및 장비 구입 사진대지(전,중,후), 착공계, 준공계, 원가계산서 및 공종별 집계표, 내역서, 고용산재보험 완납증명서, 폐기물처리 확인서, 하자보수보증증권(단, 공사비가 3,000만원 이하인 경우 하자보증 이행각서로 대체 가능), 지급보증보험증권 등
- ※ 첨부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만 첨부
- 집행등록 완료 후 실적보고서 제출(창업 정산서 첨부)
- 실적보고서 검토 완료 후 정산 종료

6

보조금 지원중지 및 환수 - 선정자만 해당

- 사업완료 후 보조금 최종 정산일로부터 만 3년간 사업체를 유지 못할 경우
 - 휴업 등 사실상 사업체를 방치하는 경우는 유지 기간에서 제외
 - ※ 예외 : 대표자의 사망,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폐업한 경우, 질병 등 국가 재난상황에 따른 영향으로 폐업한 경우, 기타 창업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
- 대상자 선정 후 1개월 이상 특정한 이유 없이 창업 진행을 하지 않는 경우
- 순창군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
- 보조금을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경우
- 부정수급의 경우
 - 신청자가 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, 지급받는 행위 일체
 - ※ 지방보조금에 관한 법령위반 등의 처분은 「지방보조금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행안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,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 준용

7

유의사항

- 제출서류에 총사업비 산출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또는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- 신청서 접수 후 별도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선정 및 보조금 신청·교부를 위한 행정절차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음
- 예산의 범위와 사업효과를 감안하여 지원액은 제출한 신청 사업비와 다를 수 있음
- 최종 선정 이후 자격조건 결격사유 및 불성실한 사업 진행 등이 발견될 경우 사업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
[붙임 1]

순창군 청년창업 지원사업 제외업종

표준산업분류	업종
33409	도박기계 및 사행성,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
41~42	건설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107 중	예술품,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
46209 중	일담배 도매업
46331	주류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 (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)
46416, 46417 중	모피제품 도매업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오락 게임용품 도매업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게임기 및 게임팩 소매업
47811 중	약국, 한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47993	방문 판매업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
56211	일반유흥주점업
56212	무도유흥주점업
58122 중	경마, 경륜,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
58211, 58212, 58219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68	부동산업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731	수의업
73904 중	감정평가업
75330	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(예: 탐정업, 홍신소 등)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보건업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2	오락장 운영업
91221	전자 게임장 운영업
91222	컴퓨터 게임방 운영업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중기당 및 안마시술소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비영리 개인사업자 : 어린이집, 영유아 대상 정보센터 등 • 비영리 법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상법상 '비영리 및 단체'인 학교법인·의료법인·협회 등 - '민법' 및 특별법상 종교법인·재단법인·비영리특별법인 등 - '사회복지사업법'상 사회복지법인 등 - 교회 등 종교단체 •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불건전 업종, 무인점포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시설과 순창군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, 본 사업취지와 무관한 업종 등

[서식 2]

순창군 청년창업 지원사업 사업계획서								
사업 장 현 황	소유 구분	자가			사업장면적	m ²		
		임차	전세			만원	사업장면적	m ²
			월세	만원(보증금: 만원)		사업장면적	m ²	
	입지 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주택가 <input type="checkbox"/> 학교&학원가 <input type="checkbox"/> 사무실주변 <input type="checkbox"/> 변화가 <input type="checkbox"/> 유흥가 <input type="checkbox"/> 시장 <input type="checkbox"/> 유원지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)						
보조사업 계획	총 사업비 (①+②+③+④)	① 시설공사비	② 기계, 장비 구입비	③ 기타사업비	④ 부가가치세			
	원	원	원	원	원			
	○ 사업기간 : 2025. . . . ~ 2025. . . . - 공사(인테리어 등) : 2025. . . . ~ 2025. . . . - 물품구입(기계장비 구입 등) : 2025. . . . ~ 2025. . . . ○ 사업내용 - 공사 내용 : - 물품구입 내용 :							
자금조달 계획	보조금 [총 사업비 중 부가세를 빼 금액(①+②+③)의 50%]		자부담					
			자기자금 (예금 등)	차입금 (신용대출 등)				
	원		원	원		원		
○ 구비서류 - 사업장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(임차기간 3년이상) 1부 - 총사업비 산출근거 • 시설공사 산출근거(원가계산서, 공중별집계표, 설계내역서, 도면 등 상세 세부내역 첨부) • 기계 및 장비 견적서(실견적, 비교견적 각 1부) - 사업장현황사진(전면, 사업부분) 각 1부 - 창업계획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 각 1부								

[서식 2-1]

순창군 청년창업 지원사업 창업계획서	
신청인 / 창업업체(업종)명	/
창업동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창업 동기(이유)를 솔직하게 기재 - -
보유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창업과 관련하여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경력 또는 자격증을 기재 및 첨부 - -
상권분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본인이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에 관련된 주변 상권분석 내용 기재 - -
창업성공전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을 성공시키기 위한 계획 또는 내용을 상세히 기재 - - - - -
홍보방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홍보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재 - -
사업목표 (수익성, 일자리창출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구체적인 목표 매출액(월별, 연별 등) 및 일자리창출(본인포함 고용인원) 등 기재 - -

[서식 2-2]

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

1. 순창군은 「순창군 청년창업 지원사업」 추진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 등)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·관리하고 있으며, 제공하신 정보는 지원사업 신청자의 본인 확인 및 관련 일정 알림, 정보 전달, 부정수급 관리 등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사용됩니다.

수집항목	수집목적	보유 및 이용기간
가. 성명	사업신청 관련 본인 확인과 창업유지 확인 등 사후관리	사업 운영기간 및 종료이후 사업 문서 보존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 (제공 동의 일이 속한 연도부터 최대 만5년)
나. 성별		
다. 주소		
라. 주민등록번호		
마. 연락처(휴대폰번호 등)	일정 알림 및 정보 전달	-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대상자 선발 후 파기
바. 이메일		

※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9조와 관련 보조금 중복 여부 처리 확인 및 부정수급 관리를 위해 주민번호 수집함

2. 순창군은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(가~차목) 받거나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조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·처리할 수 있으며, 해당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.

※ 제3자 제공동의 (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)

제공받는자	개인정보 이용목적	제공항목	제공받으려는 자의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
유사사업 관련 부서 및 기관 공공기관	적격심사를 위한 자료 검토, 유사 보조사업 수혜여부 확인 및 창업유지 확인 등 사후관리	이름, 주소, 주민등록번호, 휴대전화번호	사업 운영기간 및 종료이후 사업 문서 보존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 (제공 동의 일이 속한 연도부터 최대 만5년)

3. 「순창군 청년창업 지원사업」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, 유사사업 관련부서 등 제3자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신청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. 순창군과 제3자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.
4. 신청자는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·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,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·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신청자 본인은 위 내용을 숙지하였으며, 「순창군 청년창업 지원사업」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동의합니까?

동의합니다. 동의하지 않습니다.

신청자 본인은 「순창군 청년창업 지원사업」 신청을 위한 고유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 등)의 수집·이용·제공에 동의합니까?

동의합니다. 동의하지 않습니다.

2025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/인)

[서식 2-3]

2025년 순창군 청년창업 지원사업 참가 서약서

신청자	성 명	생 년 월 일
	연 락 처	주 소

본인은 순창군에서 시행하는 「2025년 순창군 청년창업 지원사업」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될 경우, 관련 보조사업 규정에 따라 사업기간 내에 창업을 이행할 것이며, 다음과 같은 사항의 위반 적발시 보조금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등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.

- 다 음 -

1. 사업완료 후 **보조금 최종 정산일로부터 만 3년간 사업체를 유지 못할 경우**
2. 대상자 선정 후 **1개월 이상 특정한 이유 없이 창업 진행을 하지 않는 경우**
3. 순창군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
4. 보조금을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경우
5. 신청자가 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, 지급받는 행위 일체
6. 기타 위법사항 적발 등

※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지방보조금법」, 「지방보조금법 시행령」, 「지방보조금 관리기준(행안부)」, 「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등 관계 법령을 준용함

2025년 월 일

신청자 : (서명/인)

순창군수 귀하